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28 _ 2017년 6월

이 사람의 향기 |

“살기 위해 정신장애운동을 시작했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포커스 |

정부 기금, 장애인들에게도 사용해야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재원확보에 성패가 달렸다.

이슈포착 |

‘정신보건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렘브란트의 장애인과 고야의 장애인



아은뱅이를 위로하는 베드로와 요한(렘브란트 1659년)



스스로 돌아다니는 보르도의 거지(고야, 1746~1828년)

렘브란트의 장애인은 땅바닥에 앉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다보고 있는 그를 두 성인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거지는 교회의 은혜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비루해 보입니다. 반면, '스스로 돌아다니는' 고야의 장애인은 독립심이 강해 보입니다. 당돌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적선은 당신의 자비가 아니라 의무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당당한 '주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옹골차고 떳떳해 보입니다.

스페인 화가 고야는 40세 전후에 열병으로 청력을 상실하고 그 후유증 때문에 심한 정신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 시점을 전후로 고야는 화려한 색상을 버리고 흑과 백 두 가지 색으로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검은 그림들>은 20세기 초현실주의 화풍의 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예술의 깊이와 풍성함을 선사해준 셈입니다.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28 _ 2017년 6월

CONTENTS

	이미지 단상	렘브란트의 장애인과 고야의 장애인
02	편집자 편지	새 정부에 거는 기대
04	칼럼	누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인가?
06	의정돌보기	올바른 용어 사용은 장애인 인권의 출발점이다
10	이 사람의 향기	“살기 위해 정신장애운동을 시작했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17	포커스1	정부 기금, 장애인들에게도 사용해야
22	포커스2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재원확보에 성패가 달렸다.
25	이슈포착	‘정신보건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29	생활속 모니터링	베트남 연수를 다녀와서
34	영화평	자폐성 장애에 대한 새로운 해석 - 류미레 (다큐멘터리 감독)
38	포럼은 지금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평등을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불가역할 줄 알았던 민주주의가 10년 동안이나 퇴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선택이어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사람이 먼저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장애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평등이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또 제도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새 정부는 옳은 정치를 실천해야 하고 또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호는 특별히 정신장애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여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향기>에서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가장 열정적으로 정신장애운동을 하는 활동가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왜 정신장애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특히 「정신보건법」 개정과 강제입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 대답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또 <이슈포착>에서는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총장인 권오용 변호사가 「정신보건법」 개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입장을 실었습니다. 이 대표와 권 사무총장은 개정 법률이 정신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개악된 측면도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칼럼>에서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바라보는 우리 센터의 시각을 실었습니다.

<의정돋보기>는 오래된 쟁점이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장애 관련 용어 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 장애운동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장애자', '장애우' '정신이상자' 같이 순화되어야 할 장애 관련 언어들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의의 대변기구인 지방의회에서도 부적절한 장애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한 사회의 인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장애 용어가 올바르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장애인식이 개선되었습니까?

〈포커스 1〉에서는 기금법에 따라 운용되는 각종 기금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중 용처에 장애인 지원을 특정한 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기금들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에 사용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포커스 2〉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글을 실었습니다. 정 소장은 400조 예산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주요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저성장 시대의 사회복지 분야 재정투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투자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경제 분야 지출 80조원을 50조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30조원을 사회분야로 돌려도 성장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정 소장의 주장입니다.

〈생활 속 모니터링〉은 베트남의 이동편의시설 상황을 전합니다. 지난 5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 직원은 베트남 호치민시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포럼은 5년 전부터 현지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베트남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는 그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두 나라 장애인들의 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포럼 소통협력팀 김철 팀장이 수동휠체어를 타고 호치민시 곳곳을 다녀본 경험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한국의 중증 장애인 김 팀장의 베트남 체험기가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마른장마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독자님들 개개인과 가정에 소낙비 같은 시원한 복지정치가 배달되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누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인가?

김용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우리사회가 정신장애인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신장애는 무한 경쟁과 이를 강요하는 조직문화, 사회적 시선 및 태도는 물론 물신평조, 폭력을 조장하는 게임물까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어 관련된 부정적 요인을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올해 3월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4월 ‘울산 아들의 노모 살인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원인을 다루기보다는 다수 비장애인을 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신질환자 관리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까지 생산하고 있다.

편견이 탄생시킨 모순

이 편견은 명칭을 포함한 전부가 개정되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그 결과, 이 법률은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상충하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법률이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입·퇴원 절차와 의료행위에 대한 거부나 동의 등에 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대표적이다.

이는 ‘입원 또는 입소의 최소화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 우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의입원 권장’,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주거지, 타인과의 교류 등에 있어 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 법률의 기본이념(제2조)과도 배치된다.

예를들어, 이 법률은 자의에 의한 입·퇴원 절차 외에 동의입원(제42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경찰의 요청에 따른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제44조) 또는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에 의한 응급입원(제50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의입원은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자발적 절차라고는 하나, 퇴원절차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 퇴원을 제한할 수 있고 진단결과 비자발적 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자발적 절차에 해당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입원요건을 입원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다른 비자의 입원절차와 마찬가지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이전 법률보다 진일보 하였으나, 입·퇴원 절차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문제는 고스란히 안고 있다. 심지어 행정입원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자·타해 위험에 대한 경찰관의 임의 판단을 근거로 입원 신청이 가능하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의 입·퇴원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는 일부 규정이 있지만, 모두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은 물론, 정신 장애인에 대한 비자의적 구금, 강제입원, 강제치료를 금지하고 탈 시설과 지역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라는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나 2016년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폐해를 초래하는 舊정신보건법 24조 1항, 2항에 대하여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침해할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와 같다

2014년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만성정신장애인 11,072명 중 58.8%가 10년 이상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중이며, 20년 이상 17.6%, 30년 이상이 4.6%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기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자의 61%가 보호자의 의한 비자의 입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정신보건시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관련 진정 건은 평균 3천 건으로 장애인 차별 진정 접수 건의 2.4배,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진정 건의 181배에 달하고 있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탈 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이 시급히 병행되어야 할 이유다.

그렇다고 퇴원 이후의 자립생활 지원, 즉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준비 부족이 부각되어 탈 시설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다. 탈 시설화를 이루는 것은 정의를 지연시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나 마찬가지다.

자립생활 지원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 향유를 증진시키는 유용한 정책이지만, 오랜 기간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채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며, 어쩌면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을 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

올바른 용어 사용은 장애인 인권의 출발점이다

김용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장애인을 지칭하는 차별적 용어를 대하는 장애인들의 시선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응은 장애인 일반의 그것과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를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적 시선과 태도, 환경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추구하는 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의 동정적 시선을 거부함은 물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익 지원을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바탕을 두고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장애와 관련된 용어에 때로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방의회 모니터링 과정에서 모니터링 단원들은 우수발언과 황당발언을 수집하고 그 이유를 적시하고 있는데,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32조(괴롭힘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차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진정 접수 현황을 보면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분야 다음으로 괴롭힘에 의한 진정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과 구별하는 용어인 비장애인 대신 ‘일반인’ 또는 ‘정상인’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생기는 시선입니다. 장애인도 일반인이고 정상인이니까요. 성소수자들이 ‘일반’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반’이란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우’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사회의 동정적 시선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우는 친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장애인을 인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장애우입니다.’ 라는 어법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용어에는 ‘장애자’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者)라는 표현이 낮추어 부르는 데서 거부감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장애자’ 라는 말은 1980년대까지 공식적으로 쓰던 말입니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난 후부터 ‘장애인’이라 정의하게 되었는데, 흔히 ‘장애자’를 줄여 ‘애자’라고 부르는 일종의 은어가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하할 때 사용되어 온 것에서 기인한 거부감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적장애를 ‘정신지체’로 표현하는 의원발언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나 장애인 당사자 앞에서 장님, 정신박약, 지진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관용적 표현들에는 여전히 장애 차별적 요소들이 남아있습니다.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장애를 질병으로 인식시키고,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다’ 또는 ‘장애를 극복하다’ 처럼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등이 그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흑인운동 과정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드러나지 않도록 쓰이는 ‘African-American’ 대신 ‘Black’이란 말을 흑인 당사자들이 선호한 경우도 있고, ‘병어리 삼룡이’, 시집가면 ‘귀머거리 삼년, 병어리 삼년’ 처럼 그 자체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언어장애인 삼룡이’, ‘청각장애인 삼년, 언어장애인 삼년’으로 바뀌었을 때는 고유의 운율의 맛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거부감을 보이는 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법제처가 2014년 장애인단체와 함께 선정한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용어는 맹인(시각장애인), 간질병자(뇌전증환자), 간질(뇌전증), 농아자(청각 및 언어 장애인), 농아(청각 및 언어 장애), 정신병자(정신 질환자), 불구자(신체장애인), 불구(신체장애), 장애자(장애인), 이상 9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입법조사처에서 시행령 등을 제외한 법률만 놓고 추가 조사했더니 6건이 더 나왔고, 지금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로 국민투표법 59조는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해 자신이.....”, 형법 11조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258조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등이 있고, 헌법 제34조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또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절망하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습니다. 더구나 아래 지방의회 회의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의원의 발언을 통해 그것을 접하게 된다면 더하겠지요. 정신보건관리 예산을 둘러싼 지방의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신장애인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시각은 특별하다기 보다 일반화된 우리사회의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정신장애인을 ‘정신이상자’로 표현하고 언제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신보건시설의 기능을 격리치료를 위한 수용시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고려를 ‘사회적 불안 요소를 방지’ 하는 것쯤으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뼈뚫어진 시선이 편견을 만들고 편견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발언록에서 우리는 시민의 공론이 모아지는 지방의회도 이 같은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3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000 의원 발언 中(2016. 6. 14)

000 의원 정신보건관리 부분 예산이 약 35억 원쯤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정신보건관리 분야로…….

담당과장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렵거나 만성질환자, 쉽게 말해서 심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있을 경우에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남도 내에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000 의원 사설 정신병원도 있죠?

담당과장 우리가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설이 아니고 일반 법인에서 운영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〇〇〇 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정신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상당히 신문상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법인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치료자, 정신이상자 이분들이 중증인 경우에는 격리를 하더만요.

담당과장 예, 중증은 별도로 국립병원에 격리를 합니다.

(중략)

〇〇〇 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경기도 화성 그러면 느낌이 그렇잖아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어떻게 보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원가, 음주 질주해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도에서, 복지보건국에서 이런 부분 나름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경남도가 대형 사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담당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〇〇〇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병원을 갔는데 시장통에 알코올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중증환자들은 격리를 한다고 그래요.

담당과장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병원에 갑니다.

〇〇〇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권이 있다 보니까 경증환자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 명씩, 네 명씩 나와 가지고 술을 많이 먹고 약간 정신이상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민원 현장을 갔는데 좀 더 우리 도에서 그런 요양기관, 병원을 과장님, 관리·감독할 필요 있죠?

담당과장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인인 지방의원들부터 제대로 된 장애 용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 정신장애운동을 시작했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

정리 **함솔이**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이정하 대표가 지난 5월 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월 30일부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 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정신장애 인운동 최일선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를 만났다. 조현증 당사자인 이 대표는 정신장애 인문화예술협동조합(준)을 꾸린 뒤, 파도손 활동뿐 아니라 한국정신장애인연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조현병환우회 등 여러 당사자 조직들과 힘을 합쳐 거리시위, 토론회, 입법활동 등을 하고 있다.

“다시 태어나도 정신장애인이 되겠다.”

이정하 대표는 따뜻한 미소가 잘 어울리는 여성이다. 그는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뿐 아니라 모든 정신장애 당사자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다시 태어나도 정신장애인이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정신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도 대단하다.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동료 당사자들은 저의 동지들입니다. 매우 친밀하고요. 일상적으로 대화도 하지만 중요사안에 대해 항상 논의하고 논쟁하고 투쟁 방향을 통일시켜 가죠. 정도 많이 들었고요. 운동가뿐 아니라 일반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에 대한 우정과 애정이 깊습니다. 저는 정신장애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정신장애인이 될 거예요. 정신장애인이 안 됐으면 당사자 사회를 몰랐을 겁니다. 그건 싫습니다. 저는 당사자들이 세 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없거든요.

이렇게 친한 이유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이 그만큼 고단하고 소외되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는 집단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의 처지가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가족은 물론이고 이 사회 전체에서 마치 범죄집단인양 불가촉천민인양 대우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동료들끼리 서로 기대고 정이 애틋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동료들과 겪은 일화를 들려준다.

일상생활에서 제일 불편한 게 장소 이동이에요. 지하철을 못 타요. 공황장애가 오기 때문에 큰마음 먹어야 타요. 한번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데 도와주는 분이 없어서 친한 동료에게 데려 달라고 했어요. 둘이서 환승역을 두 번 지나치고 1시간 30분 거리를 3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다. 어떻게 나보다 더 심하니.”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당사자들과 만나려면 길을 잘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또 동료들이 갑자기 아파 연락이 오면 출동해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당사자들은 알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스스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전화도 자주해요. 잠을 못자는 게 신호죠. 그러면 입원해서 쉬어야 하는데, 다들 폐쇄병동은 죽어도 가기 싫어하거든요. 갈 병원이 없어서 악화되어 강제 입원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다행히, 2016년 서울에 개방형 정신병원이 생겼다. 국립서울병원이 새 건물로 이사

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방형 정신병원은 기존처럼 입원 중심의 폐쇄 병동 대신 외래 중심 병원이고, 환자가 입원을 하더라도 강제입원이 아니라 자의입원을 원칙으로 하는 곳이다.

작년에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방병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자의입원을 했어요. 과거에는 가고 싶은 병원이 없어서 악화되어 강제입원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퇴원 후 컨디션이 회복되어 지금은 활동을 지장 없이 하고 있어요. 조현증 당사자들은 체력이 약하고 질환 자체를 건디는데 에너지를 대부분 소진해요. 정말 가만있어도 힘든 게 조현증 당사자의 애환입니다. 에너지가 늘 부족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해야 자기관리가 되는데, 개방형 병원 같은 게 큰 도움이 되죠.

이 대표를 비롯하여 정신장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증상이 어떤지, 발병 조짐이 어떠한지, 언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잘 인지한다고 한다. 이를 ‘병식(病識)’이라고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몸이 나른하고 힘이 든다. 이때는 잠을 푹 자는 게 최선이라는 게 이 대표의 경험담이다. 병식이 확연할 때는 휴식을 통해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혹시 당사자가 증상을 깨닫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에서 자극하지 말고 조곤조곤 설득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잠을 자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듯 정신장애 당사자가 어느 정도는 자신이 겪는 증상을 통제할 수 있다면, 강제입원보다 개방형 병원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방법일 것이다. 복지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모든 정신병원을 개방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다.

“강제입원은 합법적 국가폭력”

하지만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현실은 아직도 막막하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 현실은 최악이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율이 70%나 되고, 평균 입원 일수가 230일이 넘는다. 적어도 OECD에서는 이런 나라가 없다. 병동 내 인권침해도 도를 넘은지 오래다. 무슨 약인지도 모른 채 강제투약 당하는 것이 일상이고, 조금만 저항해도 구속복을 입혀 독방에 감금하고, 휴대전화로 외부와 자유롭게 통신하는 건 언감생심이다. 이정하 대표도 끔찍한 강제입원을 경험했다.

조현증 당사자들이 겪는 경험은 실제 상황입니다. 미친 게 아니고요. 느끼고, 보고, 만지는 정신적, 신체적 감각이 일반 사람들과 다를 뿐입니다. 당사자에게는 현실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망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당사

자를 모욕하고, 강제 입원시킵니다. 강제입원은 우리의 존재와 영혼을 부정하고 침탈하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8번의 강제입원을 겪으면서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고문과 학대를 겪었습니다. 다시 강제입원이 되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런 건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놓은 합법적 국가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과도 인연이 끊겨 생이별을 했습니다. 고독하지요,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폐쇄병동에서,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는 절대고립의 공간에서 이 대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쨌든, 마음을 안정시키고 살아나가야 했으니까. 간호사한테 이면지와 사인펜을 달라고 애원해서 자신이 강제로 수용된 정신병동의 모습을 스케치하며 하루하루 연명했다. 이렇게 몇 년을 살면서 정신병동에서 나온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존자(survivor)'라고 부르는데, 이 대표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이정하 대표가 정신병동에서 그린 그림들. 동일한 방을 그린 것인데, 좌측에는 쇠창살이 있는 창문과 간호사실로 연결된 문이 보인다. 우측에는 밖을 볼 수 없는 불투명 유리창이 보인다. 좌측 그림에서 문 앞에 좌변기가 놓여있는 걸로 봐서 대소변도 방안에서 해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2014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 같은 압력에 한국 정부는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 5월 30일 시행하였다. 범법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그런데 시행 전부터 개정 법률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정신장애 당사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서 개악된 것인지 개선된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법률 개정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을 문자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정신보건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사망 선고를 받은 정신보건법을 다시 살려놓은 꼴입니다. 당사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시설과 의료계를 위한 법이죠. 이런 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과거사를 덮어버리고 명칭마저도 위선적으로 바꾼 이런 법률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보건법을 폐지하려고 투쟁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정신건강복지법은 많은 모순이 있는 법이고 정신보건법과 본질이 같습니다. 강제입원의 형태만 지능화된 법률입니다. 아예, 강제입원을 금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강제입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신체적 질환과 차별 없이 응급의료 개념으로 가야합니다. 정신병원산업 때문에 이런 것이 사라지지 않는데, 이런 비극을 끝낼 때가 됐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비극적인 대감금입니다.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합니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정신보건법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대표의 말처럼 개정 법률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강제입원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입원 종류를 기존의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에서 오히려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강제입원을 추가하였다. ‘동의입원’은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나 전문가가 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살고 싶어서 장애운동을 한다.”

이정하 대표에게 정신장애란 무엇일까? 그는 정신장애인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사회심리적장애”라고 말한다. 정신적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고, “사회심리적장애”는 한 인간이 인생에서 만나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라고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삶의 갈등과 충격 속에서 조금 더 약한 사람은 한계상황을 맞이합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게 되면 인체는 스스로 살고 싶어서 비상체제로 돌입하는데, 그게 정신질환이죠. 생존본능인 거죠. 하지만 그 증상은 본질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철저하게 사회적 이면서 심리적 요인과 연동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질환이 온 게 아니고, 질환을 일으킨 원인은 바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정신장애운동을 하는 활동가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정신장애운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다소 뜻밖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린다고 하여 그것을 정신병자라니, 미친 사람 취급하고 오해를 합니다. 전 단 한 번도 자해나 타해를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랬던 적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단지 살려고 했던 행동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너무 많은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힘든 건 나인데, 타인들이 가하는 폭력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살로 돌아가는 사회가 무섭습니다.

일단 제가 살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세상도 있는 겁니다. 당장 살 수가 없고 자살하게 생겼기 때문에, 당사자운동을 한 겁니다. 자살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싶지 않거든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살고 싶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장애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서 절박함을 느낀다. 그들에게는 운동이 곧 삶인 것이다. 살기위해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무엇보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당사자가 전문가이니까요. 의식 있는 당사자들이 정신장애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당사자성에 대한 올바른 주장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의사의 논리를, 시설의 논리를 주장하면 수많은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 서비스가 장애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쪽으로 전달체계를 바뀌도록 투쟁해야 합니다. 관리와 편리성 위주의 장애인정책을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인 중심의 장애운동이 이제는 정신장애 쪽으로 무

게 중심이 이동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이고 합법적인 권리 박탈은 다른 장애유형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현재 감금상태고 사회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졌고, 병원 바깥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유령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정하 대표가 손수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에게 운동 현장은 투쟁의 공간만은 아니다. 그곳은 동료애를 확인하는 공간이고,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공간이고,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장애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조현중 당사자로서 그는 자신의 질병을 긍정하고,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 더 성숙한 인격을 가꾸고 있다.

당사자로서 철학도 중요하지만 투병도 중요합니다. 투병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고 돌파할 것인가는 인간이기에 어떤 사람이나 풀어야할 인생 숙제일 것입니

다. 시행착오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요. 내일 이 삶이 끝나더라도 후회 없이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당사자는 발병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답도 없습니다. 무너져 버린 '나' 라는 폐허 속에 남아 있는 자원을 찾아서 끊임없이 '나' 라는 존재를 건축을 하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인에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격화와 승화가 그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더 작아지고 물건처럼 되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신질환을 극복한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프로이트는 신경증환자가 인류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것,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어둠에 가려져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정하 대표는 독한 정신과 약물 때문인지 손이 떨린다고 한다. 점점 무뎠어가는 손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그는 그림을 그린다. 집중해서 뭔가를 그리고 있으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은 치유 과정이기도 하다. 그의 그림이, 그의 삶이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하길 기원해 본다.

정부 기금, 장애인들에게도 사용해야

글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기금(基金, fund)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되는 특정 자금을 말한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다. 즉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올해의 국가 재정은 일반회계예산, 10여 종의 특별회계예산, 67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기금 수입규모와 지출규모는 614조 7천억 원에 이른다.

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 사업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으로 분류되며, 기금의 성격에 따라 기금의 사용처는 달라진다. 우리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금’ 관련 법률은 모두 17건이고, 그 중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명칭에 ‘기금’이 포함된 것만 조사하고 법률 내용에 기금 관련 규정을 둔 개별법들은 제외했다).

〈표1〉 기금 관련 법률 현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군인복지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보훈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굵은 글씨로 표시한 법률에만 장애인 지원조항이 있음.

‘기금’을 장애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령은 〈표1〉에서 보다시피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령이다. 해당 법의 제5조제1항제8호는 관광기금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에 대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해당 법의 제23조제3항제3호는 복권기금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다.

〈표2〉 기금법의 장애인 지원 근거 조항

법령	장애인 지원 근거 조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어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기금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어째서 장애인 관련 지원을 명시한 법령이 이렇게 적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법령 내 장애인 관련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지만, 그럼에도 보다 탄력

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금을 국가가 운용한다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관광 기금’ 과 ‘복권기금’ 이외에도 법률의 취지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다른 기금 관련 법률 들도 장애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제8항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방안 연구 및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기금을 북한주민에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구호사업 및 개발지원 외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셋째,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 조항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가령, 주택기금을 활용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주택을 건설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이다. 넷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6조와 제7조를 추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주택에 대한 자재 및 기술에 대한 연구를 증진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제7항의 기금 지원의 용도를 현역 군인과 군무원, 예비역 군인에 국한하지 않고 상이군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군사상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표3〉 장애인 지원 근거가 필요한 기금법

법령	장애인 지원 조항	
문화재 보호 기금법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8.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방안 연구 및 설치 지원</p> <p>9.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p>

남북협력 기금법 시행령	<p>제8조(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p> <p>3.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제8조(기금의 지원 등의 요건)</p> <p>3.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나.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주택 도시 기금법	<p>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용자</p> <p>가. 국민주택의 건설</p> <p>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p> <p>다. 준 주택의 건설</p> <p>라. 준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p> <p>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p> <p>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 사업</p> <p>사. 공업화주택의 건설</p> <p>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 상한 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p> <p>자.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 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p>	<p>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p>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용자</p> <p>...</p> <p>차.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의 건설</p>
주택 도시 기금법 시행령	<p>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p> <p>2.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p> <p>3.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p> <p>4.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p> <p>5.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 주택건설사업 지원</p>	<p>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 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p> <p>6. 유니버설디자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p> <p>7. 유니버설디자인 주택의 건설지원</p>

<p>군인복지 기금법</p>	<p>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지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 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p>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 상이군인에 대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p>
---------------------	---	---

지금까지 기금 관련 법령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의 필요와 마땅한 당위성을 가질 때 확보된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우리네 삶에 필요한 기금을 주장하고, 미비한 기금 내에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대, 재원확보에 성패가 달렸다.

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前)정부의 복지확대 공약 파기를 기억하라

박근혜 정부가 당선될 당시 주목받았던 복지 공약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누리과정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책임지겠다는 것 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지켜지지 못했다. 아니 지키지 않았다. 기초연금 공약과 누리과정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고개를 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나라에 돈이 없다는 논리였다. IMF를 겪으며 나라의 파산의 공포를 경험해본 국민에게 나라에 돈이 없다는 공포심 조장은 핵심공약을 파기해도 괜찮을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는 듯하다. 이 같은 논리는 복지정책이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할 때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처럼 복지정책의 추진은 재원확보 여부를 둘러싸고 성패가 갈리기가 쉽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복지공약 추진을 위해 조달해야 할 재원의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이미 눈앞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공공일자리 창출 연 3.2조원, 아동수당 도입 2.1조원, 육아휴직 확대 1.8조 원 등 복지관련 10대 공약을 실현하는 데에만도 연 2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은 그 실현 가능성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기금의 여유재원을 확보하

고 고소득자와 법인으로부터 세입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크게 재원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지출구조조정(연 16조원)이야 말로 관료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복지예산 속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 예산이다. 올해 2017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금액은 120조원이다. 120조원 사회복지 지출금액 중에서 45조원은 공적연금부문에 지출되고 21조원은 주택부문에 지출된다. 노동부문은 19조원, 기초생활보장에 지출되는 금액은 10조원이다. 반면 취약계층 지원부문은 2.5조원에 불과하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 2.5조원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사업 총액은 1.5조원이다. 1.5조원 장애인 관련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장애인소득보장 사업으로 17년 7,24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장애인소득보장사업은 장애인연금 사업 예산(5,550억 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장애인 연금 사업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35만 명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수당은 736억 원,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애수당으로 546억 원,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으로 311억 원이 지출된다. 장애인소득보장사업 외에 가장 큰 예산지출 사업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6000억 원)이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이 대부분(5165억 원)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대부분(5072억 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출된다. 자치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할 때 70%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지방에서 30%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대선 시기의 복지공약 경쟁에서도 장애인 관련 공약은 주목받지 못했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예산의 증액은커녕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30% 재원확보가 제대로 이뤄질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부가 바뀔까

나라예산이 400조원이 넘어섰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중앙정부의 재정이 400조원을 넘었다는 것인데, 느낌에는 크게 증가한 것 같지만 지난 해 추경예산(397조원)을 기준으로 보자면 얼마 늘어나지도 않았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공공재정 규모의 증가도 덩달아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한 마디로 새로운 재원확보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을 대리해서 나라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회는 400조원이 넘어가는 나라재정을 모두 꼼꼼히 들여다보고 수술을 하는 벽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2017년 국회가 수정한 예산 규모가 전체 규모대비 2%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년 예산이 크게 변하지 않고 관료들이 편성한 그대로 국회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나라 진짜 주인은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자를 내세우는 국민도 아니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대통령도 아니고, 400조원을 실제로 주무르고 있는 관료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온다.

재정지출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다

총선이 멀게 만 느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허니문을 만끽하는 오늘이 너무나도 소중한게 느껴질 것이다. 특히 레임덕에 민감한 관료 집단과 하나하나 치열한 기 싸움과 수 싸움이 예고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지금이 아니고서는 어쩌면 불가능한 과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증세 카드를 드는 것보다 지출개혁에 나서는 편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산구조는 70년대 개발연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기준으로만 비교해보자. GDP 대비 복지예산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고 경제예산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어가고 있다. 과거의 기준으로 설계된 경제예산은 대기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들은 한계기업과 좀비기업들을 연명시키며 부실 기업을 양산시키고 저가입찰을 유도해 건강한 중소기업까지 망가뜨리며 과잉투자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2014년에 발표한 연구서의 내용이다. 해당 KDI의 연구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은 기업의 수익률이 예산지원에 탈락한 기업의 수익률보다 더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예처럼 저성장 시대의 사회복지 분야 공공 재정투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제투자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 분야 지출 80조원을 50조원으로 낮추고 30조원을 사회분야로만 돌려도 나라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생활기반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 말로 저성장시대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17년 정부 예산분석에 따르면 세금을 늘리지 않고 경제 분야 세출구조조정과 융자부문 지출개혁 및 기금여유재원 활용과 공공부문 2% 재량예산 확보만으로도 매년 45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재정지출개혁만으로도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러한 지출개혁은 정치개혁을 전제로 하는 만큼 관료와 재벌, 정치권과 언론 및 학계까지 기존의 예산 카르텔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까지 이르게 했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다시 올 수 없는 골든타임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이어 전체 인구 감소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적 흥망의 기로를 맞이하는 셈이다. 복지 분야 확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가 역사의 무게로 무겁게 다가오는 오늘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글 권오용 변호사(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1. 개정 배경

명칭 변경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은 2013년 5월2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증진법안이었다. 정부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①“정신질환자” 개념의 축소 ②정신건강증진장신설 ③비자의입퇴원 제도의 요건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6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그동안 발의된 정부 제출 전부개정안,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하여 발의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그리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던 개정 법률안들을 통합하여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최종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기존 정부안과 비교할 때 비자의입원 절차에 관하여 많은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음에도 관련 장애단체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연대(카미)를 비롯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뿐 아니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의학회와 의사협회 등 거의 대부분의 관련단체들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금년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2.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① 정신질환자 정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

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한 이유는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각종 자격과 직업, 공직 등에서 배제되는 차별적인 법령이 많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차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정신장애의 정의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이므로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축소됨으로써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인 정신장애인의 범위도 축소되어 정신장애인에 포함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② 동의입원제도의 신설

개정 법률은 동의입원이라는 새로운 입원유형을 신설하였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자의에 의하여 입원하는 것이지만, 자의입원과 달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은 자의 입원 등을 한 사람이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동의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신설된 동의입원제도는 그 명칭에 ‘동의’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뿐 그 본질은 비자의입원 절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로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이겠다고 홍보하고 있음에도 비자의입원의 종류를 늘인 것은 인권보장과는 상반되는 태도다. 앞으로 동의입원 후 비자의입원 되는 환자들이 많이 늘 것이 예상된다.

③ 비자의입원의 요건과 진단절차의 강화

개정 전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 또는 ‘자·타해 위험성’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비자의입원이 가능하였던 것을 개정 법률은 ‘입원치료의 필요성’ 과 ‘자·타해 위험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이 추상적이고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 개정 법률에 따르면, 치료목적인 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

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또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치료목적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우선 입원시켜서 진단과 평가를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정신과의사 단체들은 위와 같이 입원절차의 강화로 비자의입원을 할 때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 2명의 진단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를 처리할 인력이 절대 부족할뿐 아니라 연간 약10만 건이 넘는 비자의입원에 대하여 전국 5개의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④ 입원적정성심사제도 신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절차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자의입원에 대하여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에 의한 입원적정성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입원이나 요양원입소 환자들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원의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강제입원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그 실효성이나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⑤ 정신요양시설 설치요건의 완화와 국·공립 요양시설의 설치

현행 정신보건법 제10조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이므로 매우 어려워져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요양시설의 정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개정 법률 제22조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권자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국·공립 요양시설설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요양시설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4년 가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도 보고된 바 있지만, 한번 입소되면 거의 평생 수용되어 지내야 하는 정신요양시설이 개정 법률에 의하

여 늘어나게 되는 것은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있다.

3. 마치며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29일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폐해를 초래하는 정신보건법 24조 1항, 2항에 대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불합치’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폐지하고 탈원화와 지역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라고 권고하였고 WHO는 개정 법률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정부에 공식서한을 보내왔다. 그러나 개정 정신보건복지법과 하위법령은 경찰관에 의한 정신요양원 입소절차와 자유롭게 입원하여도 퇴원이 거절되는 동의입원제도를 추가하고, 전체 정신장애인의 입, 퇴원기록의 전산수집관리와 지역사회치료명령 제도를 강화하였다.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박탈되고 경찰에 의하여 관리, 수용되는 ‘위험한 관리대상자’로 인권과 삶이 더 추락하게 되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비자의입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변화된 원칙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서 정신장애인의 시설수용화의 폐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연수를 다녀와서

글 김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소통협력팀장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 3박 5일간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직원 분들과 함께 베트남(호치민)을 다녀왔다. KOICA 베트남 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직원 워크숍이었다. 그간 국내연수만 다닌 터라 해외 연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휠체어 접근성이 낮을까 불안감도 있었다.

출국

5월 12일 새벽 4시 반,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짐을 꾸려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워크숍 인솔은 박장우 차장님이 수고해주셨다. 휠체어는 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보딩브리지를 건넌 후에 수화물로 부쳐졌다.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 출국심사대를 거쳐 항공기 탑승구까지 불편함 없이 이동하였다. 휠체어 승객은 비장애인 승객보다 먼저 기내에 탑승했다. 기내 입구에서 기내휠체어를 옮겨 타면, 항공사 직원이 좌석까지 뒤에서 밀어준다. 기내휠체어는 기내가 좁아서 스스로 미는 휠이 없고, 엉덩이를 살짝 걸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휠체어시트에 바짝 움츠려 휠체어에 몸을 맞추었다. 기내의 좁은 통로를 이동하면서 순간 체형이 크지 않아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한숨이 절로 나왔다. 좌석도 5시간 40분간 앉을 좌석치곤 꽤 좁아보였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에게 장시간의 비행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싶었다.



베트남에서도 버스 승하차의 어려움이 있었다.



상점 앞 낮은 단차를 확인할 수 있다.

도착

베트남 시간으로 11시경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와는 2시간 시차가 있었다. 기내에서 내릴 때는 비장애인 승객이 내린 다음에 내렸다. 호치민 공항 직원의 안내로 입국절차를 마쳤다. 공항은 생각한 것보다 깨끗하였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현지에서 통역을 담당할 호야 씨(현지 가이드)와 인사를 나누고 29인승 일반버스로 이동하였다. 버스 승하차의 어려움은 베트남이나 서울이나 같은 상황이었다.

첫인상

호치민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수많은 오토바이 행렬이 자동차와 뒤엉켜 심각한 교통 체증과 귀가 가까운 정도의 경적소리였다. 안전모와 마스크를 착용한 오토바이 행렬이 무질서하게 보였지만 그 속에서 길이 뚫리고 이곳만의 신호가 있는 듯해 신기하기도 했다.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이다 보니 도로와 인도간의 경계는 대부분 낮은 단차와 경사로로 되어있었다.

휠체어를 사용해서 인도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다. 인도에 주차한 오토바이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 차라리 차도로 내려가 오토바이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상점이나 식당 입구는 대부분 평평하거나 경사도가 설치 되어있어 오토바이를 상점 안으로 쉽게 이동 시킬 수 있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이용자에게 천국이었다. 그 덕분인지 식당이나 상점은 휠체어 접근성이 좋았다.

기관방문

베트남 방문 첫째 날과 넷째 날. 장애인단체를 방문했다. 장애인단체 DRD 직원들이 마중 나와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DRD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기관의 지원으로 (KOICA 사업) 호치민시 장애인 이동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의 현지 대중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KOICA 국제 개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이 사업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효과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였다.

호치민시 방송에도 소개 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업이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CED 청각장애인단체다. 주택가 3층에 위치하였고 주요사업으로



DRD 센터를 방문하여 인사말을 듣고 있다.



CED 청각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그 곳에서 학습중인 아이들을 소개받고 있다.

청각장애인 교육훈련, 교육 노동에 대한 정책운동과 컨설팅 평가, 건강 상담, 보청기 후원, 전화서비스 등의 청각장애인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방문은 베트남의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보장 수준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지원이 매우 열악하여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도 그러했던 것처럼 점차 나아지리라 기대감과 희망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그들의 메시지 또한 그러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녀본 대부분의 지역은 장애인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주 출입 경사로나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가 어려웠다. 최근에 완공한 대형 쇼핑몰임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계단이 있는 승강기를 타야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베트남 전쟁 기념관은 건물 입구에 경사로가 있었지만 경사로의 경사가 급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다. 다행히도 내부에는 승강기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생리현상은 해결할 수 있었다.



대형 쇼핑몰 출입구 경사로가 막혀있다.

3박 5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베트남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80년대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1981년 우리나라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식성장과 운동도 이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하다. 이들의 인권의식과 사회권 보장이 향상되도록 우리의 역할도 계속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연속였고 우리나라의 앞선 경험을 본 삼아 베트남 또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베트남 현지음식인 분짜를 먹으러 갔다.



전쟁 기념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원과 사진을 찍어보았다.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았다.

두서없는 연수 후기를 적다보니 베트남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글로 마무리 되어버렸다. 좋아 지리라, 발전하리라, 나아지리라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이나 의식들이) 기대 감도 상당했는데 즐고인지라 표현이 아쉽다. 가뭄으로 답답한 지금은 비가 잦았던 베트남이 마냥 부러운 데. 싸고 맛있었던 쌀국수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열대과일의 기억도…….

자폐성 장애에 대한 새로운 해석 - 개빈 오코너감독의 <어카운턴트> -

글 류미레 푸른영상 다큐멘터리 감독

이번 호에 소개할 영화는 <어카운턴트>, 회계사라는 뜻을 가진 제목의 할리우드 영화입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서 정보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 아이들이지요. <어카운턴트>는 저희 큰 애가 TV 영화소개 프로그램을 보다가 큰 소리로 알려준 영화입니다. 작년 가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제야 소개하는 이유는 최근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이 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눈 경험 때문입니다.

<어카운턴트>의 주인공 크리스찬의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영화 속에서 스스로를 고기능 자폐성 장애인이라고 소개할 만큼 숫자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수학천재인 크리스찬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마약 조직의 검은 돈을 봐주는 회계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비밀리에 행했던 일 때문에 조직과 국가의 동시 표적이 되자 그의 숨겨졌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폐성 장애인은 자주 천재로 등장합니다. 이를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부르지요. 서번트 증후군이란 자폐성 장애 등의 뇌기능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의사소통, 언어, 지능적 측면에서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고, 비장애인과는 다른 천재성을 동시에 갖는 현상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는 그동안 다른 영화들에서 묘사했던



서번트 증후군과는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아주 특별합니다.

일단 '장애는 다름'이라는 입장이 아주 확고합니다. 크리스찬이 어렸을 때 크리스찬의 부모는 크리스찬을 '하노버 신경발달장애 클리닉'에 데려갑니다. 클리닉 원장과 크리스찬의 아버지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에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청소기를 켜면 난리를 치고, 똑같은 옷만 입고, 안는 것을 싫어하는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의 특성에 대해 원장은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큰 소음, 밝은 빛, 포옹이 도전일 수 있다는 것, 똑같은 옷만 입는 이유는 옷감의 재질 때문이라는 것 등을 세세하게 설명해줍니다. 원장은 친절함 설명 끝에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크리스찬은 아주 특별한 아이입니다." 라고요.

장애코드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두 번째 지점은 교육에 대한 시선입니다. 원장은 친화적인 하노버 클리닉에서는 크리스찬의 눈높이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칠 수 있으니 맡겨달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크리스찬이 살아갈 세상은 절대로 감각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음과 빛이 문제라면 이겨내도록 훈련시켜야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결국 장애극복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인 거지요.

결국 어머니는 떠납니다. 군의 특수요원인 아버지는 14년 동안 37번이나 이사를 다니며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동생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천재성이 타고난 것처럼 그려지는 다른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 크리스찬이 유능한 킬러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덕분인 겁니다.

이 영화는 정말 새롭고 신기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일과 중에 아주 인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밀폐된 방, 번쩍거리는 조명,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막대기 같은 걸로 자신의 다리를 문지르거나 때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교육과 훈련이 어떠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은 수련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크리스찬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자학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의 현재가 수련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말아톤>의 초원은



100% 노력형 인간이지만 크리스찬에게는 분명 천재적인 면이 있습니다. 클리닉을 처음 방문했을 때 크리스찬은 그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천 개가 넘는 직소퍼즐을 맞춥니다. 퍼즐 조각 하나가 없어서 소리치는 크리스찬을 도운 것은 원장의 딸 저스틴입니다. 역시 자폐성 장애인인 저스틴은 크

리스찬의 불안을 알아채고 바닥에 떨어진 퍼즐 한 조각을 얼른 건네줍니다. 이 장면은 이후 크리스찬과 저스틴이 어떤 관계로 살아갈지를 예고하는 복선이 됩니다.

이렇게 천재적인 회계사로서의 자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났지만 천재적인 킬러로서의 자질은 아버지의 철저한 훈련 덕분에 성취된 것입니다. 자카르타에서의 에피소드가 의미심장합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던 형제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자카르타의 무술고수에게 아이들의 훈련을 맡깁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2대 1의 대결입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나 커서 아이들은 피투성이가 되고 무술고수는 “이제 그만하자”고 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격성을 잘 다스리면 단점이 보완되는데 그런 공격성을 이용하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한다. 내 일은 자식들의 한계를 아는 거고, 당신 일은 내 자식들이 자신을 깨우치게 하는 거다.”

아버지의 교육방식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애를 도구로만 활용하지 않고 장애특성을 잘 이해해서 이야기의 흐름에 녹여낸 태도만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물론 영화적 재미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다방면의 천재이

긴 합니다만 장애인을 낮은 존재로 그려내지 않아서 저는 이 영화가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새로운 점은 더 있습니다. 최근 장애분야에서는 ‘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AAC, Augmentative & Alternative Communication)’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는 것 또한 아주 오래된 AAC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영화에는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는데 AAC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릴러영화의 특성상 중대한 반전을 미리 알게 되면 재미가 반감하기 때문에 영화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어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클리닉 원장과 아버지의 자폐성 장애에 대한 입장차이, 그리고 AAC의 발달이 자폐성 장애인의 행동반경을 넓힐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분의 아들은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오랜 노력 끝에 사용하는 단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4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문이 트일 때까지 아이가 얼마나 답답해했을까요? 생각은 다 하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카운트>에 나오는 AAC도구가 현실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클리닉 원장과 아버지 사이에 오가던 논쟁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며 열띤 토론을 하셨습니다. 자식과 함께 해온 시간과 경험이 바탕이 된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한 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생생하고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범주 안에 속하지만 고유한 인성을 가진 자식들의 삶이니 선택 또한 매 순간 처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긴 이야기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매순간 각자의 최선을 선택할 뿐이다”

<어카운트>는 이렇게 ‘장애코드로 영화읽기’에 아주 유용한 영화입니다. <어카운트> 덕분에 ‘장애코드로 영화읽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나와 당신이 같은 것을 보았다’는 그 조건이 대화의 실마리가 되고 그렇게 서로의 장애관과 장애인식에 대해서 나누고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부모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 같이 해왔던 분들이 그날 또 서로의 새로운 면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카운트>는 그렇게 유의미한 영화였습니다. 부모님들 모임에서는 이 영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회복지분야와 특수교육분야의 전문가들은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꼭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럼은 지금

(사)전북장애인인권포럼



(사)전북장애인인권포럼에서 지난 5월 10일부터 5주간 '성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성폭력예방교육 강사과정으로 <올바르게 성을 인식하고 전해라>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살아있는 교육진행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을 통해 성폭력예방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더불어 강의계획안을 작성하고 강의력 향상 및 시연 과정을 통해 전문성 및 강의 실천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 강사로 사회진출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기대 된다.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울산북구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5월 26일(금) 북구 화봉동 한솔공원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내용으로는 O/X 설문조사(저상버스에는 장애인좌석이 있다, 장애인을 도와줄 때는 그냥 도와주면 된다,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공용이다)를 실시하였고, 장애유형별 에티켓을 알려주고 리플릿을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이벤트 진행하였다.

포럼은 지금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지난 5월 27일(토) '2017 고양평화박람회'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애인권 퀴즈왕'을 진행, 장애 관련 문제를 맞이면서 장애인의 인권의식을 일깨우고 인식개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서울장애인인권포럼



(사)서울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지난 5월 30일(화) '서울시 장애인예산평가 및 개인예산제 타당성연구사업'에 대한 개인예산제 타당성 연구를 위한 표적집단면접법 회의를 진행하였다.

포럼은 지금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5월 12일부터 3박 5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KOICA 베트남 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직원 워크숍이었다.



지난 5월 18일(목)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권오용 변호사를 초청하여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웹와치 주요 사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지역모니터링센터

서울 (대표 이권희)	T. 02-833-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4층
부산 (대표 김호상)	T. 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 2층
광주 (대표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7
대전 (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동진프라자 332호
울산 (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73 세한빌딩 5층
경기 (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충남 (대표 황영란)	T. 041-631-0691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47번길 새아스프라자 501호
전북 (대표 김미아)	T. 063-228-198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만내4길 6-23
경북 (대표 정현수)	T. 054-701-2088	경북 경주시 알천북로 165-4 101호
경남 (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303호
제주 (대표 고현수)	T. 064-751-80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